

부산직할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(종류) 제 2 항 제 2 호중 “사하구간사”를 “사하구의회사무과장”으로 하여 이를 제 5 호로 하고 동항에 제 2 호, 제 3 호, 제 4 호를 신설한다.

2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
3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위원장
4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

동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 2 항 제 2 호, 제 3 호, 제 4 호의 직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 4 조(규격) “별표” 공인의 규격 3 중 “간사직인 : 정부관인규정 별표 2 직인규격 준용”을 “사무과장직인 : 2.1cm”로 하여 이를 4 로 하며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상임위원장의직인 : 2.1cm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 2 조(증류) ① (생략)</p> <p>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2. 부산직할시 <u>사하구간사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(별표) 공인의 규격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3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<u>간사직인</u> : <u>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</u></p>	<p>제 2 조(증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3. <u>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4. <u>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5. 부산직할시 <u>사하구의회 사무과장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2항 제2호, 제3호, 제4호의 직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(별표) 공인의 규격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: 2.1cm</u></p> <p>4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<u>사무과장 직인 : 2.1cm</u></p>